

## 안전관리자로서 열차승무원의 업무적 한계와 법적충돌

### Business Limits and Legal Conflicts of Train crew as Safety Manager

김진태 \* , 김보영<sup>+</sup> , 김시곤 \* \*

Jin-Tae Kim \* , Bo-Yeong Kim<sup>+</sup> , Si-Gon Kim \* \*

**초 록** 본 연구는 열차승무원이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연구하게 되었다. 또한 대법원 역시 2015년 KTX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사회통합기구 회의를 통해 열차승무원이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코레일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코레일관광개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535명의 승무원에 대하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미루고 있어 노사갈등만 키우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승무원의 처우, 승무원의 업무범위, 승무원의 안전관리자로서 업무와 지위 및 현실적 한계, 유사업종 및 동종 업계의 승무원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2017년, 2018년 2년간 고속철도운행사인 코레일과 (주)에스알에서 발생한 민원을 연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승무원이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안전관리자, 열차승무원, 비상대응매뉴얼

\*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매니저

† 교신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